4.2 일반 검토사항

- (1) 굴착작업 시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굴착 비탈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2) 굴착공사 진행 중 사전 조사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굴착면 의 안전기울기 보완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울기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기울기 기준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위험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작업 시 지반의 지질 상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무너짐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.

4.3 지반종류별 준수사항

- (1)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안전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, 필요시 충분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.
- (2) 자연지반은 매우 복잡하고 불균질하며, 굴착비탈면은 굴착후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점차 불안정해지며, 강우 등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비탈면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이들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 및 보호·보강대책이 이 루어져야 한다.
- (3) 리핑암의 경우 비탈면 높이가 10 m 이상일 경우에는 매 5.0 m 마다 폭 1 m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한다. 또한 비탈면 높이에 관계없이 흙과 암과의 경계나투수층과 불투수층과의 경계에는 필요에 따라 소단을 설치하고, 용수발생 시소단에 유도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발파암은 굴착난이도 및 암반 강도에 따라 비탈면 기울기와 소단을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하며, 연암 및 보통암인 경우 비탈면 높이 10 m 마다 1~2 m 폭의 소단을 설치하고, 경암질인 경우에는 비탈면 높이 20 m마다 폭 1~2 m의 소단을 설치하며,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와 암반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에도 폭 1~2 m의 소단을 추가 설치한다.
- (5) 풍화가 빠른 암반, 균열이 많은 암반, 바둑판 모양의 균열이 있는 암반 등 붕괴위험이 있는 암반 굴착비탈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안전 성을 검토하여 안전기울기를 결정해야 한다.